## 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

[인천지방법원 2011. 1. 28. 2009고정5972]

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정호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권원현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벌금 7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